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9노1941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강○○ (○○○○○○○-○○○○○○○○○), 학원강사
주거 서울 송파구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희도
변 호 인 범무법인 길상
담당 변호사 민병덕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3. 선고 2008고단7661 판결
판 결 선 고 2009. 9.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 쪽의 도로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다른 가담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고 이에 대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견인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진압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것일 뿐이고, 이러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협박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담 및 행위의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 6. 29. 서울광

장 앞 도로에서 50여 명과 함께 “광우병위협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가 대한문 앞 도로에 주차해 둔 무대차량을 견인하려는 경찰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다가 경찰관에 의해 밀려 인도로 올라간 사실, 피고인은 이들이 다시 도로로 나오는 것을 막고 있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어 체포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책회의는 2008. 6. 29. 16:20경 서울광장에서 있을 촛불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대한문 앞 하위 차로에 무대차량을 주차해 두고 무대설치 및 음향기기 점검 등을 하며 촛불집회 준비를 하고 있어 대한문 앞 차로는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반면 피고인은 대한문 건너편에 있는 서울광장 앞 도로를 50여 명과 함께 점거하고 있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밀려 인도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대책회의의 회원이 아니라 단순히 시위에 참가한 자였을 뿐이고, 촛불집회가 시작되기 전이라 조직적인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당시 대한문과 서울광장 사이의 도로는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50여 명이 서울광장 앞 도로를 완전히 메우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무대가 설치된 대한문 앞 도로와 달리 차량의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서울광장 앞 차로에서의 일반 공중의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대한문 앞 차로의 경우도 위 국민대책회의의 무대차량 등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인바 피고인이 대책회의의 회원으로서 무대차량 설치 등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8. 6. 29. 16:20경 대한문 앞 차로에 대책회의가 촛불집회를 위하여 무대차량과 방송차량을 주차해 두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위 차량들의 견인을 시도한 사실, 같은 시각 피고인은 서울광장 앞 도로에서 50여 명과 함께 위와 같은 경찰의 견인시도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다가 경찰관에 의해 밀려 인도로 올라간 사실, 경찰관들은 이들이 다시 도로로 나와 경찰의 견인업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도로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의경 손○○에게 ‘야 씨발놈아 이런 것 어때’라고 욕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차량 견인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은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전체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마지막 문단(원심판결문 제3면)의 ‘위 대한문 인근 차로에서의 차량 교통을 방해하고,’를 삭제하는 외

에는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2MB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2008. 6. 29. 16:20부터 16:40까지 경찰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대한문 앞 차로에서 촛불집회에 사용되는 차량으로서 불법 주차 중인 경기 ○○바○○○○호 방송차량과 경기 ○○바○○○○호 무대차량의 견인을 시도하였다.

그러자 대책회의 회원 등 50여명이 위 대한문 앞 차로를 점거하고 견인을 하기 위해 대비 중인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거나, 주위에서 위세를 떨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견인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이 때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차로에서 위 견인 작업을 방해하여 위 5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위 대한문 인근 차로에서의 차량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는 2. 판단의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응세 _____

 판사 정현미 _____

판사 조미화 _____